

위원회 규정

현행	개정(안)	비고
(신설)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제 20 장 출판심의위원회</u></p> <p><u>제60조(출판심의위원회) 교내 출판 의뢰에 따라 심의를 통해 우수한 콘텐츠를 발간할 수 있도록 출판심의위원회를 둔다.</u></p> <p><u>제61조(구성) ① 위원장은 학술정보처장으로 한다.</u></p> <p><u>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내외로 구성하며, 대학원장을 당연직으로 한다.</u></p> <p><u>③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은 그 외에 학과 및 연구분야를 고려하여 심의건별로 위원장이 선임한다.</u></p> <p><u>④ 간사는 학술정보팀장으로 한다.</u></p> <p><u>제62조(기능) 위원회는 출판부에서 출판할 도서를 심의한다.</u></p>	출판부 신설에 따른 출판심의위원회 구성